

# 투자설명서 변경 주요내용

1. 투자신탁의 명칭 : 브이아이 증소형주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[주식]

2. 변경시행일 : 2023년 07월 14일

### 3. 변경사유

- ① 부책임용역 추가 : 조민서
- ②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- ③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- ④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- ⑤ 기타 수익률 자료 등 업데이트

### 4. 변경사항(투자설명서)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<b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추 가>	<b>2023-07-14</b> 부책임용역인력 추가 : 조민서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<추 가>	<b>[부책임] 조민서</b>
	-	<b>(업데이트)</b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[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]	<추 가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증권대여 :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가. 수익률 증진 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합니다.</li> <li>·</li> <li>나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

		· 증권차입 : 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	<추 가>	증권대차 거래 위험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	<p>[세액공제]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<b>400만원</b> 이내 세액공제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 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b>4천만원</b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b>400만원</b> 이내 세액공제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(<b>괄호 추가</b>)</p> <p>단, 2020년 1월 1일 납입액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과세기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50세 이상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로 함 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(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)</p>	<p>[세액공제]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<b>600만원</b> 이내 세액공제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 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b>4천5백만원</b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b>600만원</b> 이내 세액공제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(<b>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</b>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
	[분리과세한도] <추 가>	[분리과세한도] - 연금소득이 1,2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16.5%(지방소득



	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 +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	
	<p>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</p> <p>- 다만, 연금 수령 시에도 사적 연금액(퇴직연금+개인연금)이 연간 1,200만원 이하인 경우 「분리과세」로 선택 가능합니다.</p>	<p>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</p> <p>- 다만, 연금 수령 시에도 사적 연금액(퇴직연금+개인연금)이 연간 1,200만원 이하인 경우 「분리과세」로 선택 가능하며, 연금소득이 1,2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. (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)</p>
<b>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
1. 재무정보(반기)	-	(업데이트)
	<기업공시서식 반영>	·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· 주식의 매매회전율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-	(업데이트)
<b>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연결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-	(업데이트)
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. 회사의 개요	신한아이타스(주)	신한펀드파트너스(주)

끝.